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고시개정 안내 (2014-112, 114호)

1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12호(2014. 7. 21)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14호(2014. 7. 21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93호, 2014.6.20.)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96호, 2014. 6 24.)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붙임 : 1. 고시 2014-112호 개정내역

2. 고시 2014-114호 개정내역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병원장

대리 유소영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390 (2014.07.22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sy@kha.or.kr